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안전관리기금의설치.운용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05. 5.

행 정 위 원 회

1. 審 査 經 過.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4월 26일 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5월 4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2005년 5월 6일

제11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

2. 提 案 說 明 의 要 旨 (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정진)

가. 제안이유

- 「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률」이 제정되면서 종전 「재난관리법」과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3조 규정(재해대책기금의 적립)이 폐지됨에 따라 기금의 적립 및 운용·관리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통합토록 함.
- 법률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하여 종전 우리구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하여 「재난관리기금」으로 관리·운용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조례구성 : 전문 14조, 부칙 3조

○ 주요내용

- 기금의 조성은 기금의 법정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.(안 제4조)
-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하는 이자는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(안 제 5조)
- 기금의 사용용도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 이행을 위한 용도 등에 사용한다.(안 제6조)
-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심의회를 두며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안 제7조)
-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(안 제10조)
-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(안 제11조)

다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(재난관리기금의 적립)
-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(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)

○ 추진경위

- 행정자치부 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표준안”을 참고로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토록 지침시달(2004.9.24)
- 입법예고 : 2005.2.15

3.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김찬재)

- 본 조례(안)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제정되고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용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,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,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여 다른 이견이 없으며,
-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에서 정한 재난예방, 재난피해 시설 응급복구, 주민에 대한 지원, 하천·하수도정비사업, 제설용 장비구입, 긴급 구조장비구입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우리구의 기금은 현재 19억 4천 6백만원이 적립되어 있음.

4. 審査結果 : 原案可決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·운용조례(안)

의안 번호	15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4. 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「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률」이 제정되면서 종전 「재난관리법」과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3조 규정(재해대책기금의 적립)이 폐지됨에 따라 기금의 적립 및 운용·관리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통합토록 함.
- 법률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하여 종전 우리구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하여 「재난관리기금」으로 관리·운용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조례구성 : 전문 14조, 부칙 3조

나. 주요내용

- 기금의 조성은 기금의 법정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.(안 제4조)
-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하는 이자는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(안 제 5조)
- 기금의 사용용도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 이행을 위한 용도 등에 사용한다.(안 제6조)
-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심의회를 두며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안 제7조)
-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(안 제10조)
-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(재난관리기금의 적립)
-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(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라. 입법예고 : 2005.2.15 ~ 2005.3.3(의견없음)

마. 추진경위

- 행정자치부 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표준안”을 참고로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토록 지침시달(2004.9.24)
- 입법예고 : 2005.2.15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·운용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(이하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용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심의회”라 함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심의회”를 말한다.
2. “구 금고”라 함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 제93조제2항에 의하여 영등포구와 약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설치)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과 발생시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.

제4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
2.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기타 잡수입 등

제5조(기금의 운용 및 관리) ①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

제75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하는 이자는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
②구청장은 기금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기금은 구금고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6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용도
2. 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서 정한용도

3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
4. 인명구조에 필요한 안전장비의 구입
5.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
6.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의 이행
7. 재난발생을 대비한 민간용역 및 재난발생시 응급조치사업

제7조(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) ①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.

1.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
2.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기타 기금과 관련하여 심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담당국장이 된다.

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있는 영등포구 소속 국장 또는 담당관·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⑤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회의) ①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.

②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.

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간사 등)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.

②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1.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성명
3. 심의사항

4. 심의결과

5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기금관리공무원)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 - 재난관리업무담당국장

2. 기금출납원 -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

제11조(운용계획 및 결산)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대출조건)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한도액, 이자율,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3조(준용) ①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에 의한다.

②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
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
폐지한다.